

초유의 한전 적자 해결방안 긴급 토론회

- ◆ 일시 : 2022.12.15.(목) 07:30
- ◆ 장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탄소중립위원회

초유의 한전 적자 해결방안 긴급토론회

■ 행사 개요

- (일시) 2022. 11. 15.(목) 07: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 (주관) 국회의원 양이원영 (에너지분과위원장)

■ 진행순서 (좌장 : 양이원영 부위원장)

▶ 주제발표

1. 한전 재무현황 및 건전성 개선방안
/ 조현진 한국전력공사 비상경영실장
2. 한전채 과다발행의 자본시장 영향 및 해결방안
/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지정토론

1. 한전 적자로 본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의 왜곡 문제
/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2. 가스 시장가격 왜곡으로 인한 전기요금과 한전 적자 영향
/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3. 전기요금과 한전 적자에 대한 시민 인식과 자금시장의 반응,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국회의 역할
/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

▶ 정리발언 : 김정호 위원장

한전 재무현황 및 건전성 제고방안

2022. 12. 15



1. 한전의 재무현황

□ (재무실적) 글로벌 에너지가격 강세 지속으로 '22년 3분기 누계 23.9조원 영업손실 발생

○ 주요지표 현황

구 분	뉴캐슬탄 (\$/ton)	LNG(JKM) (\$/MMbtu)	SMP (원/kWh)	판매단가 (원/kWh)
'21년 평균	137	18	94	108
'22년 1~9월	355	35	177	116

○ (별도기준) '22년 3분기 결산 결과 매출액은 50.1조원, 영업비용은 74.0조원으로 영업손실 23.9조원 기록

- 전년동기대비 손실금액 20.7조원 ↑, 부채비율 175.2%p ↑ 증가

<'22년 3분기 결산실적>

(조원, %)

구 분		'21. 3Q	'22. 3Q
별 도	영업손익	△3.2	△23.9
	부채비율	145.7	320.9
연 결	영업손익	△1.1	△21.8
	부채비율	223.2	352.6

□ (자금현황) 전례 없는 대규모 적자에 따른 부족자금 증가, '22년 3분기까지 29.7조원의 자금을 차입

○ '22년 3분기 기준, 전기판매수익 등 수입액 60.0조원 대비, 구입전력비 등 지출액은 87.6조원으로 대규모 부족자금 발생

○ 구입전력비 지급 및 만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급증세

- 자금조달 : ('20) 4.1조 → ('21) 12.2조 → ('22.3Q) 29.7조

(단위 : 조원)

구 분	'20	'21	'22(e)
조 달 액	4.1	12.2	44 내외
사 채 잔 액	30.1	38.1	70 내외

2.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

□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에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적립금)의 2배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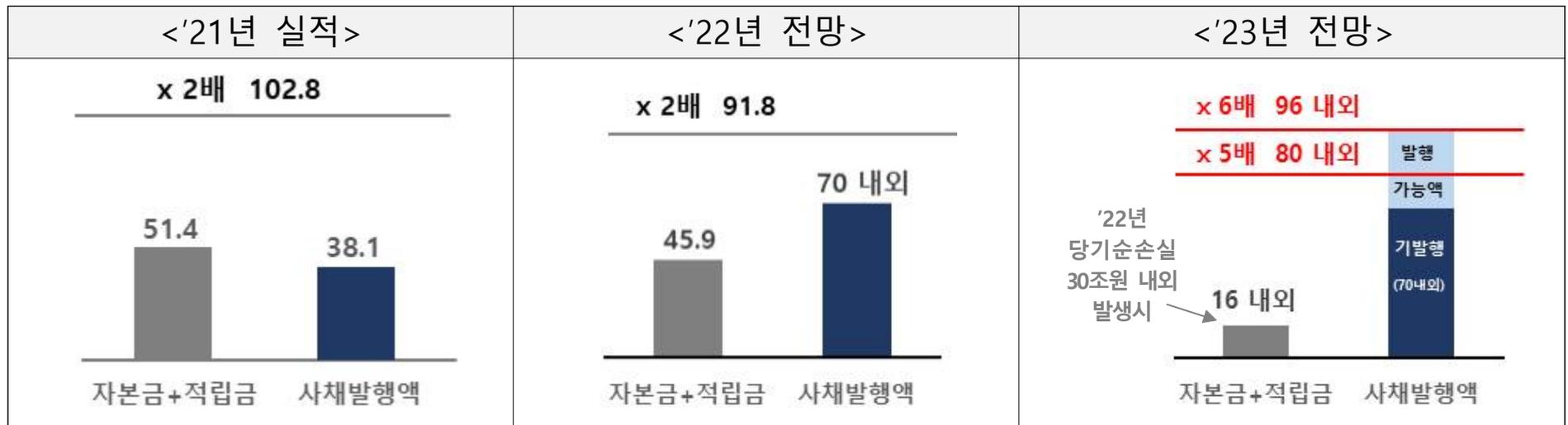
※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② :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21년에 이어 '22년 대규모 손실 누적으로 사채발행액 급증

□ 한편, 사채발행한도의 기준이 되는 **적립금 등***은 **지속 감소**하여 사채발행한도 초과 예상

○ ('17) 54.0조 → ('18) 52.9조 → ('19) 50.3조 → ('20) 51.4조 → ('21) 45.9조 → ('22) 16조 내외 e

■ 연도별 사채발행액 및 사채발행한도(조원) ■



3. 한전 재무개선 방안 - ①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 (전기요금 정상화)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

- '22년 연료비 및 기후환경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전기요금 적기 조정
- 요금조정 정례화, 연료비 조정요금 정상 운영 등 총괄원가를 반영하는 합리적 요금 결정체계 구축
- 특례요금 축소 및 원가와 괴리가 큰 종별의 단계적 정상화 등 가격 왜곡요소 제거

□ (재정지원 전환) 정책성 비용의 재정지원을 통해 비용부담 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송주법 지원, 노후변압기 교체 등 정책성 비용의 부담주체 변경(한전→전력기반기금)
- 특정사업 육성 특례할인 등 전기요금에 반영된 정책성 사업비용을 정부재정 세출 항목으로 지원

□ (전력시장 개선) 시장제도 합리적 개선으로 전력구입비 증가요인 최대한 억제

-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SMP 유지가 예상되므로 긴급상한가격제 지속적인 적용 필요
- 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율 인하폭 확대 및 인하기간 연장(현행 △15% 감면은 '22.12 종료 예정)

□ (지분매각 정부지원) 한전이 공공성 유지 목적으로 보유중인 지분 매각

- 국가 또는 국책 금융기관 등이 가스공사, 난방공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공공성이 지속 유지되도록 지원

3. 한전 재무개선 방안 - ② 고강도 자구노력

■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고강도 자구노력을 동원, 발굴하여 향후 5개년('22년~'26년) 14.3조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중

□ (자산매각) 매각 가능한 모든 자산 매각 원칙하에 1.5조원 현금흐름 개선

○ 유희부동산,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 지분의 출자지분 매각 및 해외 석탄발전소 단계적 매각 등

□ (사업조정)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투자사업 조정 등 통해 2.5조원 절감

○ 사업 공정관리를 통해 발주·착공 시기 이연 및 사옥 신증축 등 경영인프라 확충사업 축소 등

□ (비용절감) 고강도 긴축경영 및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을 통해 2.3조원 규모의 비용절감

○ 신공법 활용 설비운영 강화, 연구과제 수행시기 조정, 업무추진비 대폭 축소, 육지-제주 시장가격 통합 등

□ (기 타) 표준시설공사 부담금 현실화, 해지후 재사용수수료 조정 등 통해 1.0조원 규모의 수익 확대, 장부상 저평가된 토지의 재평가를 통해 7.0조원 자본 확충

※ 한전은 전력구입비, 감가상각비 등 통제곤란 비용이 전체 영업비용의 96.5%이고, 투자비의 대부분(97%)이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설비 투자로서 재무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에는 한계가 있음

한전채 과다 발행의 자본시장 영향 및 해결방안

최한수 (경북대)

한전채 발행의 문제와 사회적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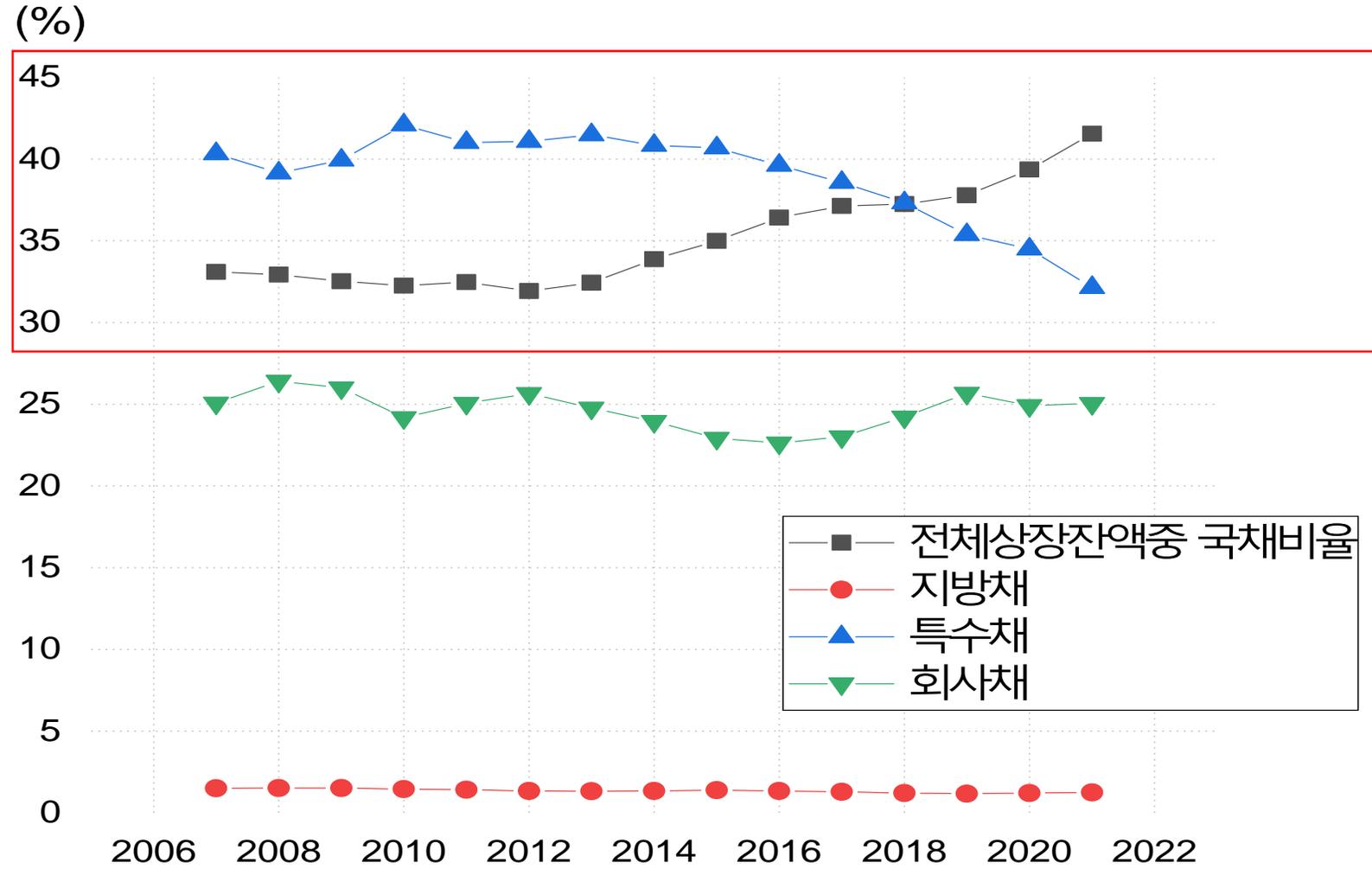
공기업 부채의 정부 보증에 대한 시장기대

낮은 이자비용(암묵적 정부보증에 따른 보조금)

과도한 부채 비율 & 자금시장 구축효과

- 왜곡된 전기요금 → 경영부실 → 정부 보증 기대로 인한 낮은 이자
- 과도한 특수채 발행 → 한계 기업 투자 구축 → 시장 불안
- 특수채 쓸림 현상 → 한계 기업 구축 → 시장 위기의 악순환

한국의 채권시장



최근 누가 채권시장을 지배하고 있는가?

은행과 공공기관

<그림 11> 신용채권 종류별 순발행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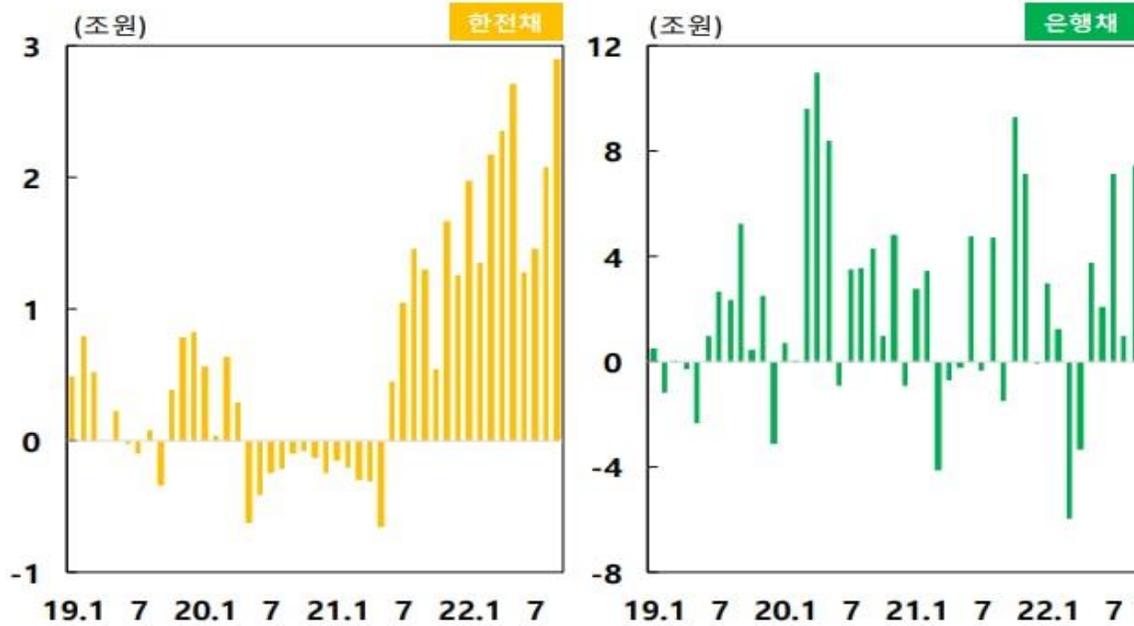
(조원)



주: 1) 분기별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자체 집계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은 자본시장에도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14> 한전채, 은행채¹⁾ 순발행 추이



주: 1) 특수은행채 포함
 자료: 연합인포맥스, 자체 집계

[\[제2022-42호\] 최근 신용채권시장 상황 평가: 신용스프레드 확대 요인을 중심으로 | BOK 이슈노트\(상세\) | 수시 | 발간주기별 검색 | 간행물 | 조사·연구 | 한국은행 홈페이지](#)

공사 사채발행 관련 법령

구분	주요 내용
한국전력공사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자본금) 자본금은 6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
	·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과다 부채만 문제가 아니라 낮은 금리로 시장의 자금을 끌어가는 것(구축효과) 이 더 위험 요소이다.

“둘째는 미래 수익을 상환 재원으로 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법이다. 그런데 레고랜드처럼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은 투자자를 모으기 쉽지 않고 금리도 높다. 강원도는 지급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비엔케이(BNK)투자증권은 2020년 11월 연 3.1%라는 낮은 금리를 제시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사로 선정됐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와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2016년 논문(‘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공기업 신용등급에 미치는 효과’)에서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금리는 같은 조건의 민간기업과 비교해 3.16%포인트 낮다고 분석했다. 암묵적 지급보증 때문이다.”

대마불사 혹은 공마불사

- 공기업의 경우는 민간기업과 달리 그 부실의 크기가 얼마든지 간에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확신, 이른바 TPTF(Too Public To Fail)이 존재
 -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석탄공사의 사례(이은경, 2012)
 -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석탄공사가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약 4,800억원
 - 만약 석탄공사가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퇴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시장에서는 공기업인 석탄공사의 퇴출 가능성을 믿지 않고 이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줌
- 이처럼 석탄 공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심지어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유는 공사의 설립법인 「대한석탄공사법」에 있는 손실액에 대한 정부보전 조항 때문
 -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발행한 사채에는 국채 수준의 신용등급이 주어지고 이로 인해 모든 시장 규율은 무력화
 - 이것이 실제 석탄공사의 부채비율을 적정 수준보다 높이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음 (허원제, 2014)

왜? 공공기관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다

<표 3> 공기업 및 사기업 신용등급 기초 통계량

아래 표는 국내 전체 공기업과 사기업의 신용등급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공기업 전체의 평균 신용등급은 AAA, 사기업 전체는 A+로 약 4등급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기업이란 본 논문에서 신용등급 추정을 위한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채권 70그룹, 즉 공모 선순위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이다. ()의 숫자는 관측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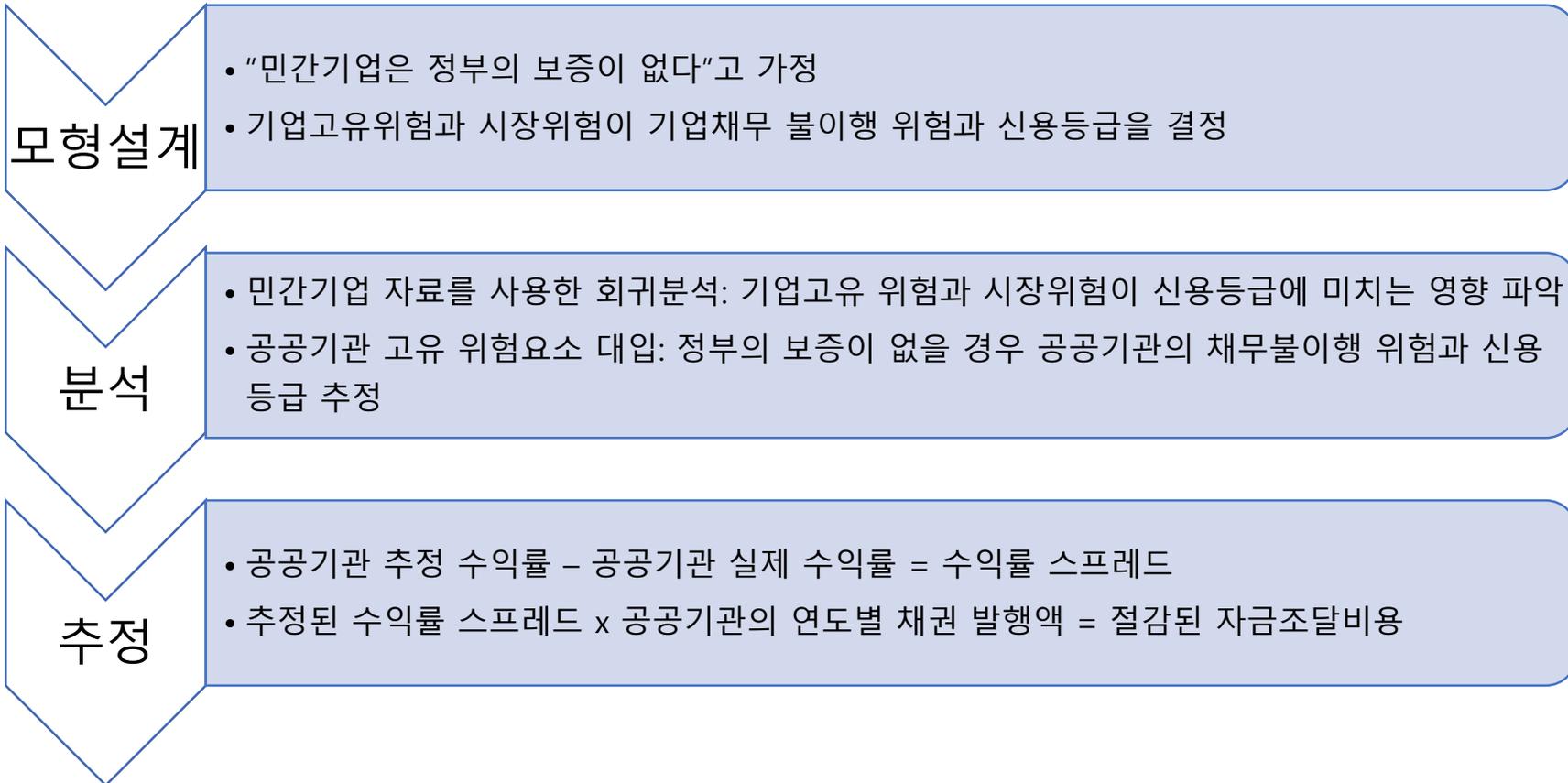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공기업 전체	24.98 (11,955)	0.23	21	25	25
	AAA		A+	AAA	AAA
사기업 전체	21.43 (10,294)	3.48	2	22	25
	A+		C0	AA-	AAA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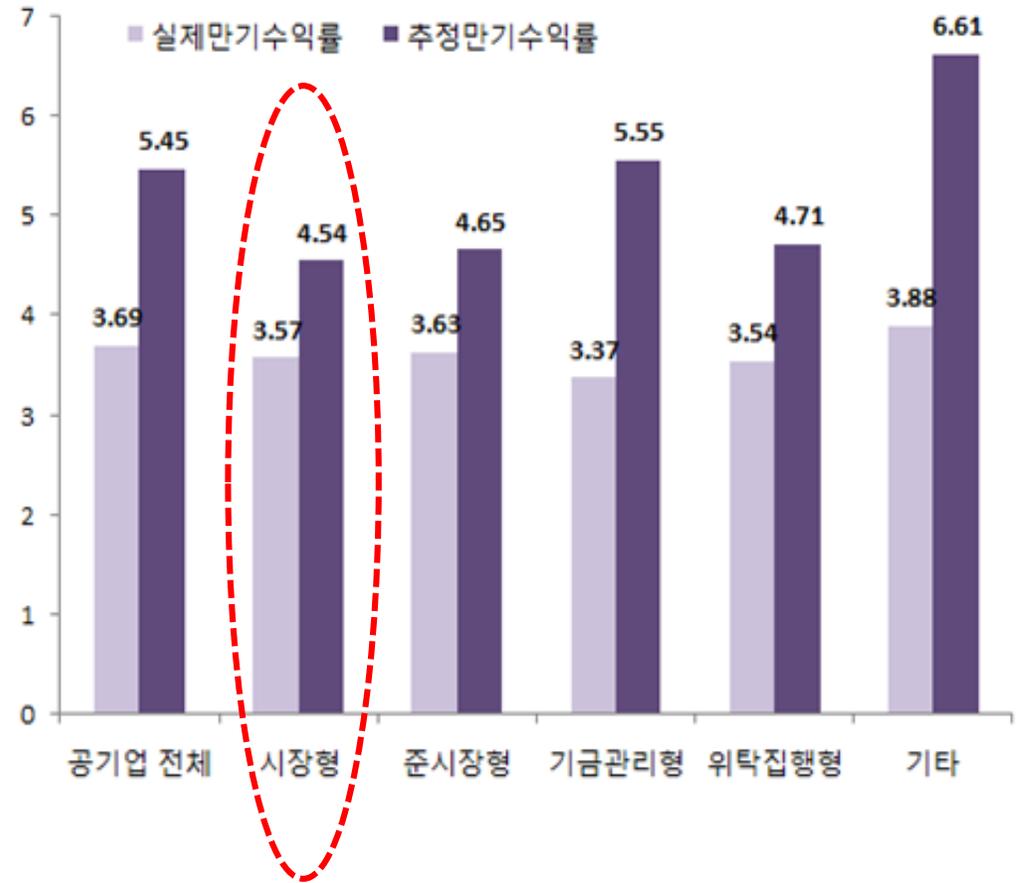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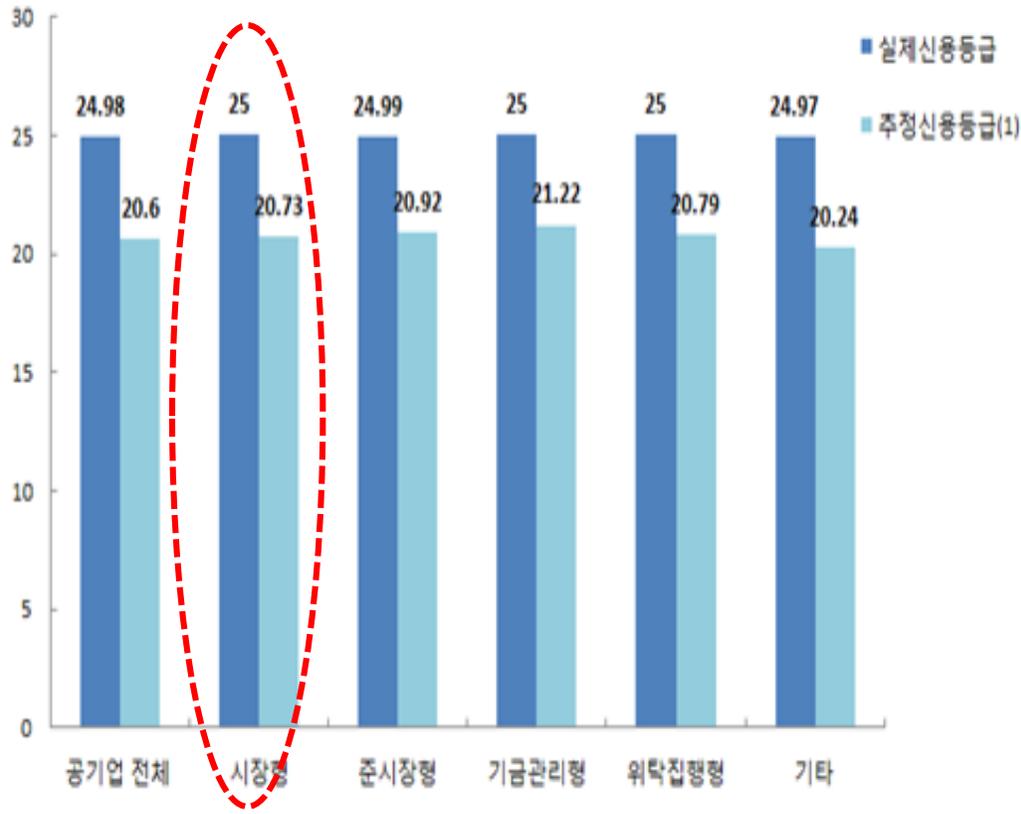
- 이러한 관점에서 공기업 부채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와 의회를 중심이 되어 검토해온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이하 본 보고서는 TBTF로 약칭)'에 대한 학계의 연구(TBTF에 대한 가장 포괄적 문헌 연구로 Strahan, 2013 참고)들을 참고
 - 2007~2008년 미국의 모기지 금융위기 당시 시장에서는 월가(Wall Street)의 거대 금융기관에 대한 TBTF의 논리가 득세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시장에서는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제(bail out)를 믿는 강한 기대가 존재하였음
 - 그 대표적인 예가 자금조달비용인데, 금융위기 당시 월가의 거대 금융기관의 경우 다른 중(소) 규모의 금융기관에 비해 월등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
 - 학자들은 거대 은행들이 누리게 된 저금리 이득을 정부의 암묵적 보증(implicit guarantee)에서 나오는 재정 보조금(subsidy)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발생하는 조건과 보조금의 크기의 관계, 그 사회적 비용에 대해 연구 진행(GAO, 2014)

최한수 이창민 (2017,2015)

◆ 공기업의 자금조달 과정 중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 추정 방법



최한수 이창민 (2015, 2017)



공기업이 채권 발행 통해 1억원 조달할 경우

- 민간에 비해 150만원 정도 낮은 비용으로 조달 가능
- 기타 공공기관 (271만원), 기금관리형 (134만원), 시장형 공기업 (100만원)

연도	암묵적 보증혜택 (%p)
2007년	1.57
2008년	2.17
2009년	4.01
2010년	2.95
2011년	1.16
2012년	0.66
2013년	0.68
2014년	1.56
2015년	1.42

공기업이 채권 발행 통해 1억원 조달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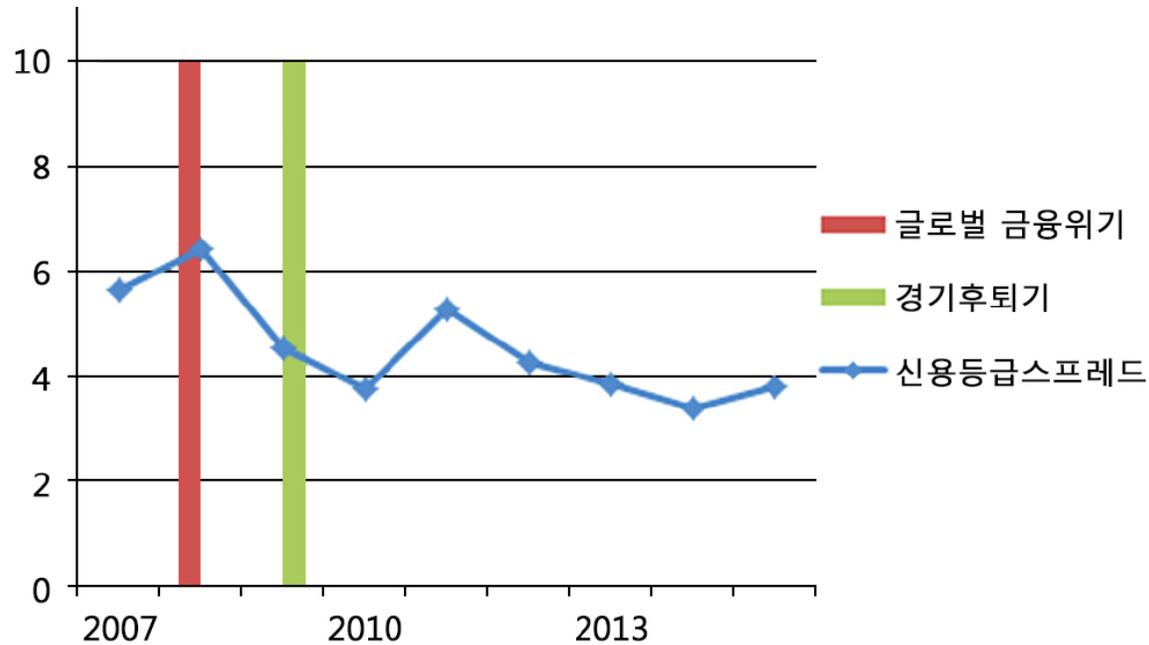
- [보조금 규모 Ⅱ]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공기업이 1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같은 조건의 민간 기업에 비해 약 150만원 정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 이는 공기업이 채권을 통해 1억원의 투자자금을 조달할 경우, 정부가 이들 공기업에 15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유사한 조건의 민간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석탄공사가 1억원을 발행할 경우 약 580만원, 한국철도공사가 약 230만원, 예금보험공사는 약 160만원 정도의 이득을 받는 것으로 추정
 - 장학재단은 1억원 발행시 약 8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85만원, 한국전력의 경우 약 136만원 정도 이자 비용을 절약하는 것으로 추정

이런 이득은 경제위기시 더 강해진다. 이는 국채와 민간회사채의 금리가 위기시에 더 벌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림 3] 공기업 신용등급 스프레드의 연도별 추이

아래 그림은 연도별 신용등급 스프레드, 즉 실제 신용등급과 가상적 신용등급의 차이, 추이를 나타낸다. 경기후퇴기의 판단기준은 해당 연도에 통계청 경기종합지수에 따른 월별순환변동치가 100 이하인 경우가 2/3 이상이면 경기후퇴기로 판단하였다. 단위는 등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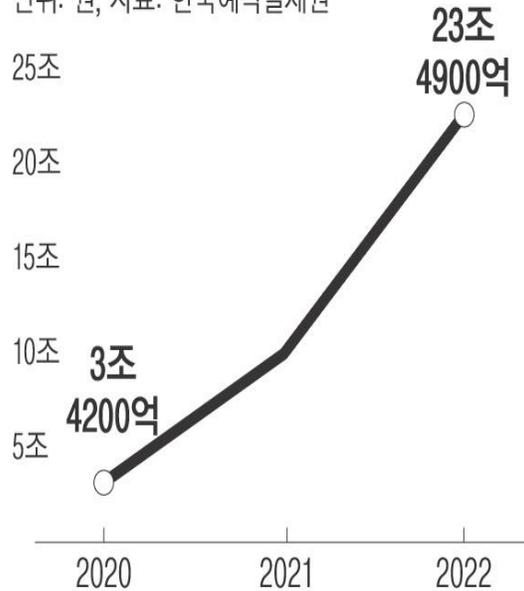
(단위: 등급)



적자 기업이 채권시장의 블랙홀이 되다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규모

단위: 원,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올해 한국전력 회사채 3년물 금리 변화

단위: %,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전력 실적 추이

연결 기준, 단위: 조원



1~9월 누적 실적 비교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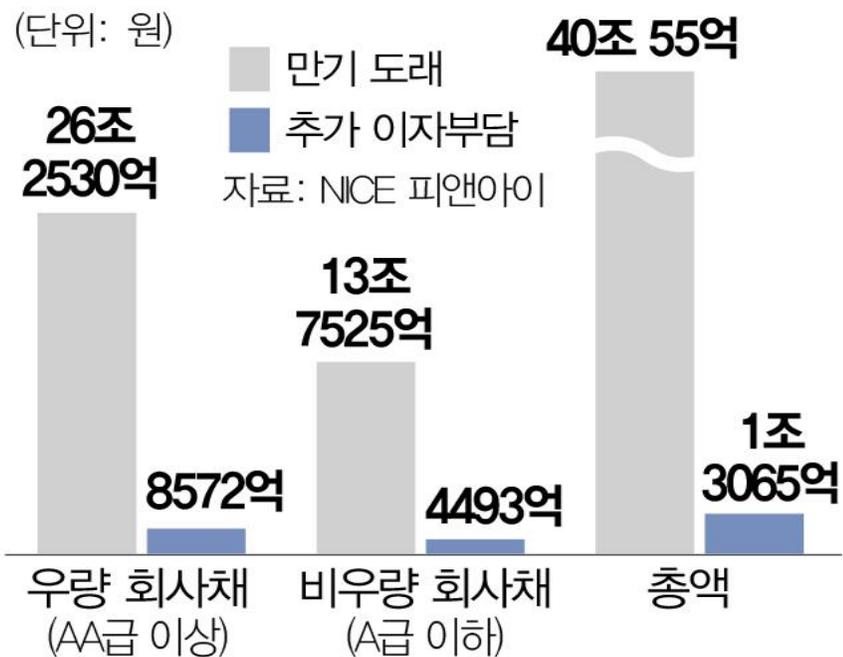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김민지 기자 20221111 YONHAPNEWS

문제는 시장 전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것



만기도래 회사채와 추가 금융비용



※만기도래 기간은 2023년말(금융·증권사 제외)

※이자부담은 신용등급별 금리를 전년동기와 비교

(물가로 인한) 대세 금리상승기에 한국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 금융위기시 정책은 펀드조성(채권안정펀드 등), 한국은행 금리인하, 한국은행발권(양적완화, SPV 등) 등
- 현재는 대세 금리 인상기이고 양적완화정책 쓰기 어려움
- 결국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등)과 시중은행의 돈을 사용해야 하고 과거에도 그래왔음. 결국 산은채, 은행채 등을 발행해 그 돈으로 어려운 금융기관, 기업에 자금 투입한 것임

- 현 정부는 (한전 문제에 있어) 정부의 재정을 투입할 의지도 전기료 인상을 설득할 의지는 없어 보임

금융시장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민간 금융기관(대표적으로 은행) 자금을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 부족한 부분은 국민연금의 자금 이용

뉴스룸 | 최신기사

5대 금융지주, 95조원 규모 유동성·자금 지원 나선다(종합)

송고시간 | 2022-11-01 07:59 FRANÇAIS



심재훈 기자
기자 페이지

유동성 공급 73조·채안·증안펀드 12조·계열사 자금공급 10조 지원
금융위원장 "시장 상황 더는 악화되지 않아...시장참가자 협조 필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금융위원장·5대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정례화



1044억
요약



가을 탄소포: Aramco

핫뉴스 →

[월드컵] 포르
릴 때 호날두

[월드컵] 김민

조선경제 > 경제 일반

[단독] '돈맥경화 사태' 국민연금 등판...한전엔 은행 대출 길 터준다

당국 단기자금시장 경색 완화 추가대책
국민연금 신보 P-CBO 사주교
한전은 채권발행 대신 은행 대출로 유도
은행 예대출 규제도 한시 완화하기로

김은영 기자

입력 2022.10.27 10:47



Google 광고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한국채권시장의 구축효과, 즉 공공기관과 은행이 자금을 저금리로 끌어가는 것의 문제는 없는가?

- 한전사태, 즉 적자경영을 채권시장에서 저금리 자금조달로 버티는 행태는 계속 나타날 것임
- 위기시가 아니라 평시에 공공기관 또는 은행에 저금리 자금조달에 대한 적절한 책임성 부과가 필요함
-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있고 의지와 실현가능성의 문제

법개정을 통해 채권발행 한도 높일 것인가



김민지 기자 20220928

YONHAPNEWS

- 자본시장 전반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 전기료 인상과 같은 정공법이 타당
- 국회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정책 대안에 대한 모색

- ● 정부의(묵시적) 보증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4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
 - 공기업 부채 관리 정책에 대해 총량규제 외의 또 다른 시각 제공
- ● 4가지 대안은 그 세부 내용에 있어 각각 차이가 있지만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음
 - 이는 정부의(묵시적) 보증에 의해 외부에 전가되고 있던 공기업의 부채 발행 비용을 내부화시키는 것
- ● [대안 1] 교정세 부과를 통한 내부화
 - 이러한 아이디어는 월가 거대 은행에 대해 부과하려고 했던 교정세금(이른바 '은행세')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음
 - 은행제도 금융기관에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암묵적 보증에 따른 피해를 교정하기 위해 제기된 것(Kocherakota, 2010)
 - 이러한 접근방법의 장점은 경제학적으로 과세의 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이나 반면에 입법적으로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정책 대안에 대한 모색

- [대안 2] 정부가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공기업에 주어진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
 - 예컨대 예금보험공사는 부보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수수료 형식으로 징수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부 역시 공기업의 채권에 대해(명시적 혹은 묵시적 형태의)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보증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 문제는 없음
- '보증 수수료 형식을 통한 내부화' 대안의 장점은 계약의 형식을 통해 회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의 형식으로 징수하는 것에 비해 집행에 있어 훨씬 더 탄력적
 - [대안 3]으로서 제시되는 배당방식의 회수와 달리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비용의 내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보다 바람직
 -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계약을 통해 이를 징수함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특히 공기업의 경영성과가 안 좋을 경우 주주나 다른 선순위 채권자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안3] 암묵적 보조금을 정부가 공기업으로부터 배당의 형식으로 회수하는 것
 - 보조금을 정부가 해당 공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배당의 최저한도로 보고 배당 결정 시 최소한 이만큼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

정책 대안에 대한 모색

- [대안4] 보조금을 정부가 실제로 가져가는 대신,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 과정에서의 추정된 보조금을 비용항목에 반영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 실제 공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애초 이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자원 조달의 방식일 뿐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평가를 진행해야 함
 - 특히 공공기관 사업 중 비용이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및 공공기관의 자기 부담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성과 수익성 평가를 진행해야 함
 - 이 경우 경제성 평가와 수익성 평가 모두 해당 사업의 비용과 수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고가 추정한 보조금의 액수를 비용항목으로 추가시킴으로써 신규 사업의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 그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특수채(공공기관, 은행)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는 아래 참고

- 최한수, 이창민, "공기업 부채와 도덕적 해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황순주, 2019.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KIIP]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도서 DB.
- 임형석, 이재연. "채권자 손실분담 (Bail-in) 국제논의와 국내도입시 고려요인 분석." KIF 정책분석보고서 2015.7 (2015): 1-105.
- 황순주. "베일인 제도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분석." 산업조직 연구 26.3 (2018): 19-66.

[토론1] 한전 적자로 본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의 왜곡 문제

김영산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한전채 과다 발행의 문제

- 국가의 암묵적 보증을 받는 공공기관들이 과도하게 부채를 발행하는 일반적인 문제를 지적.
- 한전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극단적 형태로 나타난 것임.
- 발표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채 발행 시에 시중 금리에 더하여 추가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채 발행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
- 그러나 한전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급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부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로 비용을 부과하기 힘들 것.
- 한전의 적자 중단이 최우선. 그러나 당장 적자를 멈추더라도 이미 발생한 30조의 적자로 인하여 한 번 악화된 한전의 재무상태는 그대로 유지됨.
- 수십조원의 추가적 자금을 수혈하여 부채비율을 정상화시켜야 됨.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와 한전채 발행은

1) 국가 신용의 남용

- 국가 신용을 믿고 대책 없이 적자를 누적시킴.
- 결과적으로 국가 신용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왜곡이 발생
- 국가 신용은 거대한 저수지와 같아서 웬만큼 남용해도 거의 표가 나지 않지만, 저수지가 고갈되면 큰 위기가 오듯이 국가 신용도 함부로 남용하면 커다란 위기가 올 수 있음.

2) 한전이 보유한 국가 핵심 인프라(송배전망) 자산을 ‘담보’로 전력판매사업에서의 엄청난 영업적자를 누적하고 부채를 발생시키고 있음.

-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송배전망과 계통운영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선제적 투자가 시급 (2022~2026년간 정부 추산으로 33조 이상 송배전망 투자 필요)
- 그러나 수십조에 이르는 투자재원을 조달할 여력이 없음.
- 한전의 판매 적자가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미래 발전의 발목을 잡음.
- 한전이 송배전망을 소유 관리하기에 적합한 주체인가?

■ 한전의 재무개선 방안

1) 요금 정상화

-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요금 정상화 불가능 : 요금 인상 폭 제한
- 요금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단계적’ 조정 강조
- 정부의 자의적 통제 하에 있는 이상, 적기 정상화 가능성 희박함: 정치적 부담
- 석유산업과 비교 필요: 석유류 가격은 정부 규제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급등락시에도 정부가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음. 대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대안이 논의됨.
- 당장 석유산업처럼 전력가격이 완전 자유화 될 수 없더라도,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담당할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이 절실함.

2) 전력 도매 구입비 억제

- SMP 상한제 등으로 도매가격 인위적으로 억제
- 한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정산조정계수 적용으로 SMP 적용 않음.
-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SMP는 도매시장 가격신호를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 민간발전회사들의 3분기까지 영업이익 총액이 1조8000억원. 한전 적자에 비하여 아주 작은 액수로서, 한전 적자의 주 원인이 아님.

- 도매가격 인위적 억제는 오히려 도매가격을 왜곡하여 발전사들의 동반 부실 야기.
- 한전은 평소에 발전사들과 장기계약을 맺어 연료비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차액정산장기계약이라는 제도도 준비되어 있지만, 한전은 관심이 없고 실적도 제로임.
- 그보다는 도매시장제도를 유리하게 변경시켜 도매가격을 억제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
- 도매가격이 급등할 때에 소매가격이나 가격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요를 감축시키려는 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음 (현재의 수요관리는 예비력 확보가 주목표)

3) 한전 자산 매각 및 투자조정

- 한전 자산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주주들의 소유: 이런 자산들을 매각하여 전력판매 적자를 메우는 것은 정부를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전기소비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임.
- 유희 자산 매각을 통해 조달된 자산은 미래의 투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부채 상황에 쓰인다면 결국 한전의 투자 여력을 줄이게 됨.
-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필요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국가 핵심인프라 관리상의 문제를 야기

* ‘고강도 자구노력’ 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전 임직원들은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예방이나 실질적 해결에 대한 유인 부족.

가스 시장가격 왜곡으로 본 전기요금과 한전 적자 영향

- 석광훈
-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2022년 12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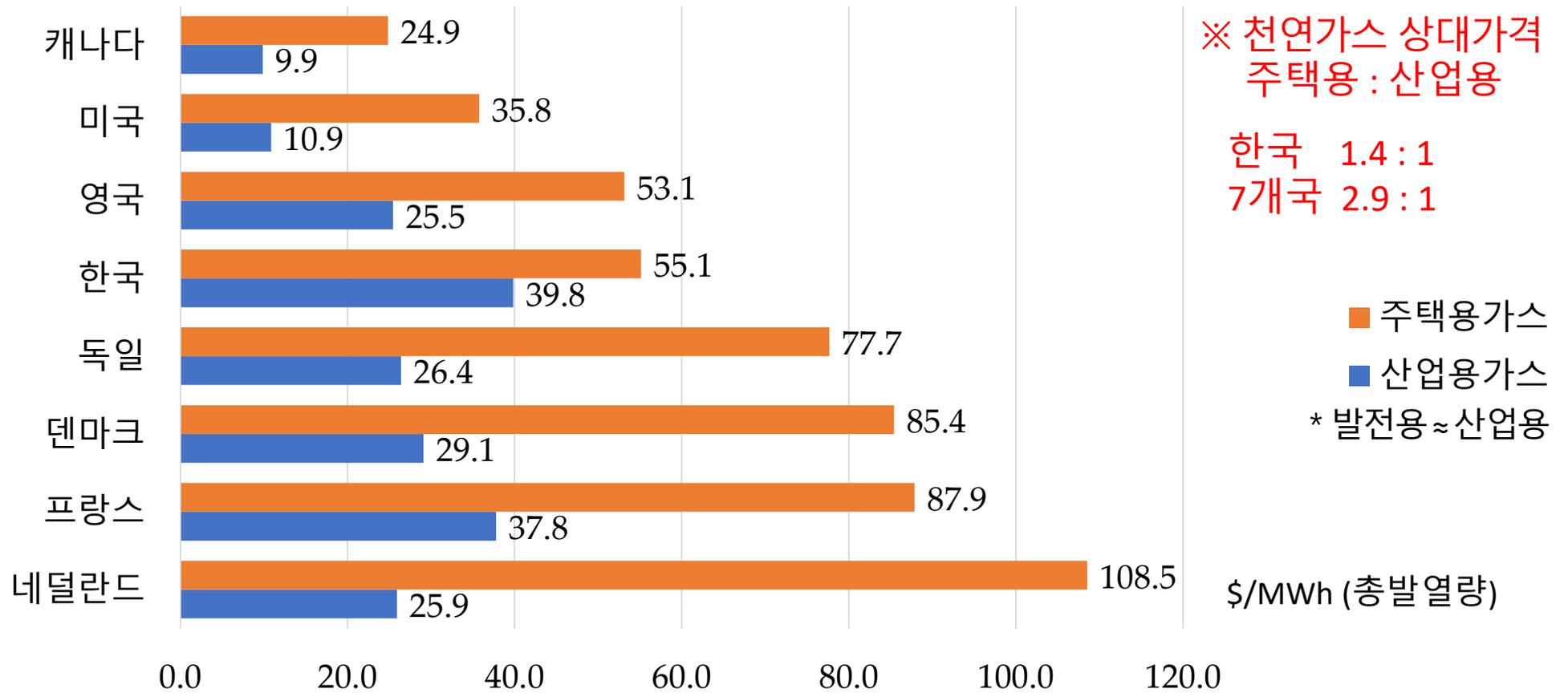
1. 전기, 도시가스 요금할인의 문제

지난 1년간 전기, 가스시장에 벌어진 일

- ① 주택용 교차보조 -> 주택용vs발전용가스, 유럽·북미 2.9:1, 국내 1.4:1
- ② 가스공사의 공급규정 개정(2021.12), 현물 LNG비용 발전용 LNG에 전가
-> 도매전기요금(SMP)폭등
- ③ 소매전기요금 원가반영 지연 -> 한전적자 폭증
- ④ 한전채로 채권시장에 부담전가 -> 정상기업(AA-) 회사채 발행불가

OECD 회원국들의 가스요금 (2020실적)

- 7개국 용도별 가격차이(2.9:1) 대비 국내 차이(1.4:1) 크게 낮음 (교차보조)
- 전쟁 전 이미 국내 주택용 가스가격은 가스전을 보유한 영국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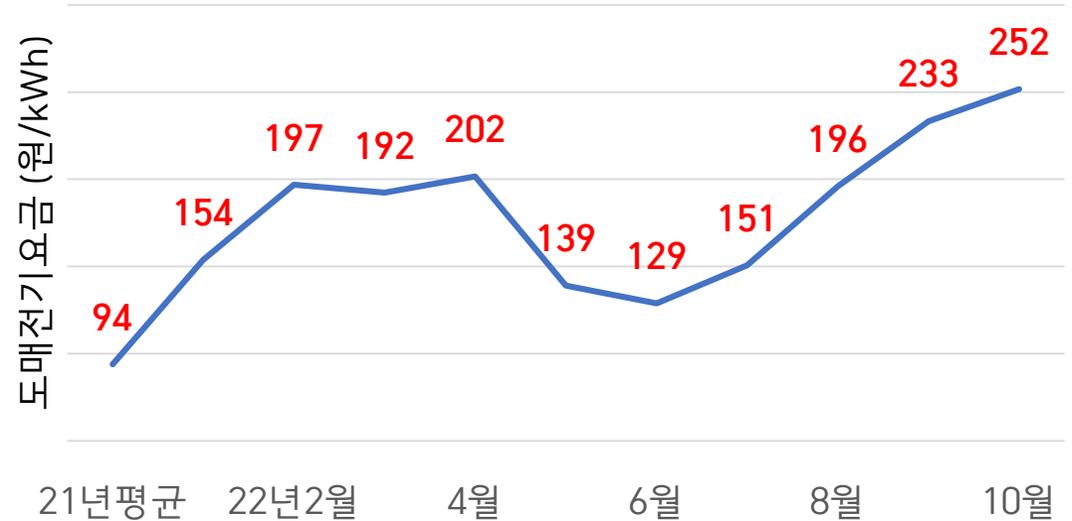


자료: 국제에너지기구, Energy Prices & Taxes 2021

주: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주택용은 높은 세금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를 제외해도 국내보다 크게 높음

주택용 가스비용 전가로 도매전기요금 폭등

- 유럽도 주택용 가스가격에 상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상한을 분기·반기별 조정, 원가반영
 - 영국은 지난 4월, 10월에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한 가격상한 조정을 통해 원가반영(주택vs발전 = 4 : 1)
- 국내는 주택용 가스의 비용상승분(현물LNG)을 산업용 및 발전사들(한전+민간)의 LNG가격에 전가해 도매전기요금 폭등 주도
 - 주택용과 발전용 가격 역전(주택vs발전 = 0.6 : 1)



	영국 용도별 가스가격			국내 용도별 가스가격			
	2021상반기	2022상반기	2022년10월	2021년	2022-1Q	2022-2Q	2022-3Q
주택용 (원/MJ)	14.2	30.7	65.7	12.9	12.9	14.6	15.7
발전용 (원/MJ)	7.7	23.7	16.3	13.2	25.9	21.8	25.3
주택/발전 가격비	1.8	1.3	4.0	1.0	0.5	0.7	0.6

참고: 영국 산업부(BEIS) 주택용 및 주요발전사 가스구입 가격통계(세전), OFGEM 도매가스 현물 월 통계, 한국가스공사 영업실적

가스공사설립의 배경, 성과, 문제

- 연탄가스중독사고 저감책으로 1980년대 전두환정부에 의해 한전에서 분리해 설립
- 도시가스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한전에게 도시가스비용을 전가해 세계최고 보급률 달성
- 가스공사의 역사적 소명 종료, 이제는 도시가스 수요관리를 위해 경쟁시장체제로 전환 필요

	도시가스보급률			산림/국토 비율
	1998년	2016년	2021년	(가스배관 설치비용 증가)
네덜란드	97.0%	95%	세계 1위 (95%)	11.2%
영국	81.9%	86%	세계 공동2위 (85%)	13.0%
한국	49.0%	82%	세계 공동2위 (85%)	63.4%
이태리	69.6%	82%	2016년 수준 유지	31.6%
벨기에	55.1%	69%		22.6%
미국	-	58%		33.9%
일본	-	55%		68.5%
독일	42.0%	52%		32.7%

참조: Griffin, H. 2000, BEIS 2017, 한국도시가스협회, 일본도시가스협회, US EIA 2017, Baratto, L. 2017

국내 전기도시가스 요금할인의 문제

- 미증유의 에너지위기에서 전기, 가스 요금할인을 지속할 경우 국가적 위기 자초, 탄소중립 정책 역행
 - 이집트, 에너지공기업을 통한 전기, 가스, 석유 요금 할인으로 정부재정 22% 수준의 적자 누적(35조원), IMF구제금융 지원(2013년)
- 에너지요금 할인은 복지정책과 달리 소득역진성이 강함
 - 이집트 요금할인(2013), 소득상위20%에 하위20%의 8배 할인혜택 집중
 - 국내 농사용 전기요금(2021), 전체 농가중 8천호(0.4%)의 부농(계약용량 300kW이상)에게 할인혜택의 40%(4,733억원) 집중
- 전기, 가스는 “공공재”가 아니라, 희소한 시장재임
 - 전기·가스는 시장경쟁도입, 정부는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조성 필요

2. 도매전기요금(SMP) 상한제의 문제와 개선점

도매전기요금 상한제의 문제

□ 동 상한제의 시행으로 도매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부담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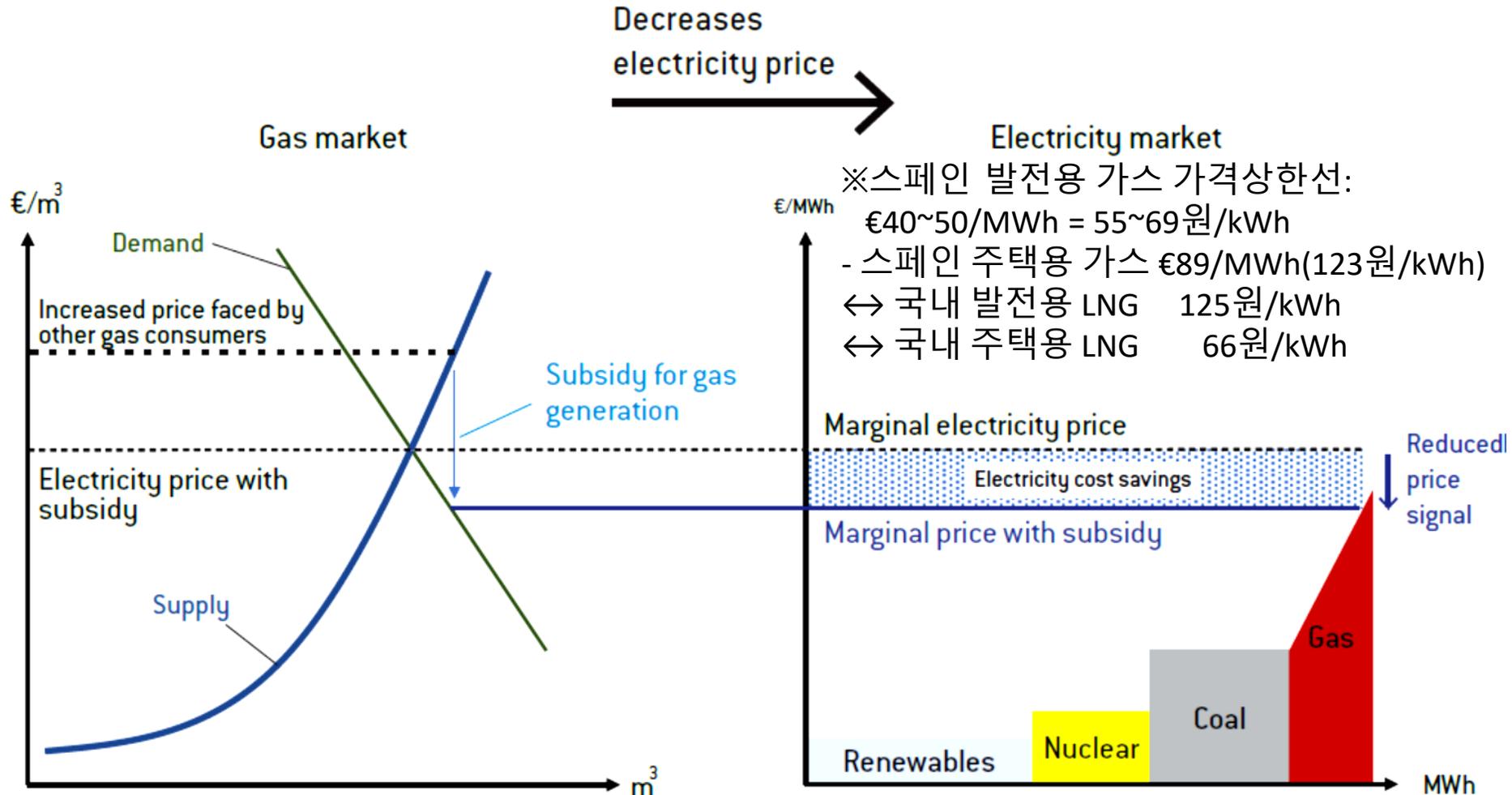
- 민간발전 사업자들은 수익악화로 해외에서 직도입하는 LNG를 해상에서 유럽국가들에게 웃돈을 받고 재판매할 위험이 있음
-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신규투자 유인을 크게 약화

□ 도매전기요금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인 발전용 LNG로의 현물LNG 비용 100%를 전가하는 문제부터 해결 필요

- 특히 발전용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적용한 스페인 사례 참고
- 현재의 위기는 향후 4년이상 지속되기에 내년이라도 개선방안 필요

스페인의 발전용 LNG 가격상한제 (지난5월~내년5월)

- 가스발전용 연료비용만 낮춤으로써 다른 발전원에 대한 추가적 가격왜곡, 갈등없이 전체 도매전기요금 대폭 감축(유럽 최저수준)



출처: 브로이골 연구소(Bruegel)

EU 대비 스페인 발전용가스 상한제의 효과

-타국 대비 단순명료하면서 가장 저렴한 도매전기요금 유지(폴란드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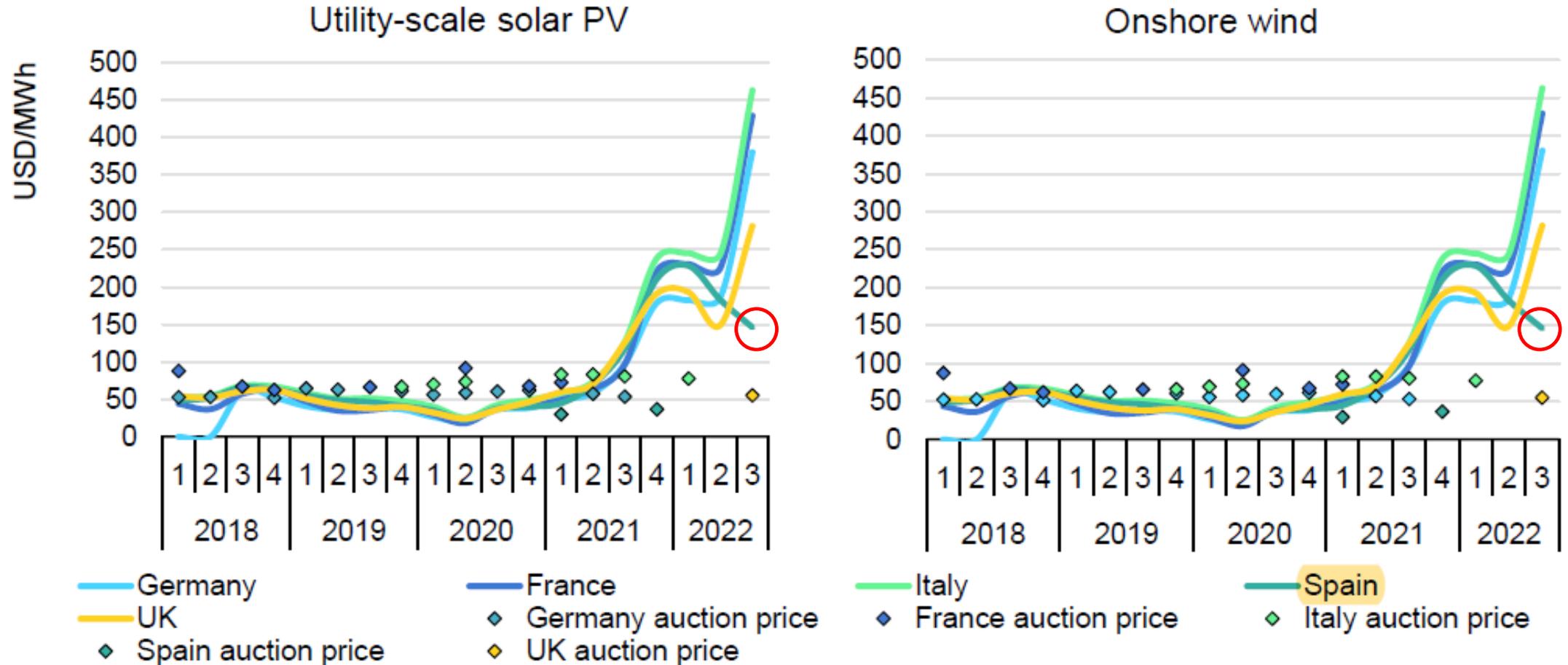
Clawback measures on electricity market revenues proposed in major European countries					
	Price ceiling per technology (€/MWh)	Clawback tax (%)	Dates of measure	Average power price (2022*)	Inframarginal generation (2021)
Germany	Solar, wind, nuclear: €130 Lignite: €82 Oil: €280	90%	Dec. 1, 2022 – Jun. 30, 2023	€233.8/MWh	75%
France	Nuclear, wind, hydro: €100 Solar: €180 Biomass: €130 Biogas: €110	10-40%	July 1, 2022 – Dec. 31, 2023	€276.4/MWh	90%
Italy	Solar, wind, hydro: €180	100%	Dec. 1, 2022 – Jun. 30, 2023	€304.6/MWh	~40%
Spain	Gas price cap for power plants: €40	Not applicable	May 11, 2022 – May 31, 2023	€174.1/MWh	~15%
Poland	According to formula differing per technology and daily power price	100%	Dec. 1, 2022 – June 30, 2023	€167.5/MWh	~40%
UK (non-EU)	Wind, solar, hydro, nuclear: €87 (£75)	45%	Jan. 1, 2023 – March 31, 2028	€234.3/MWh	27%

■ EU-aligned (legislated at EU-level)
 ■ Proposed (national)
 ■ Legislated (national)
 ■ Above EU average
 ■ Below EU average

Source: BloombergNEF.
 Note: Most price ceilings include exemptions for certain types of generators, for example small-scale generators.
 *Average power price for 2022 covers January 1, 2022, to November 30, 2022.

유럽 주요국의 태양광, 풍력 도매시장 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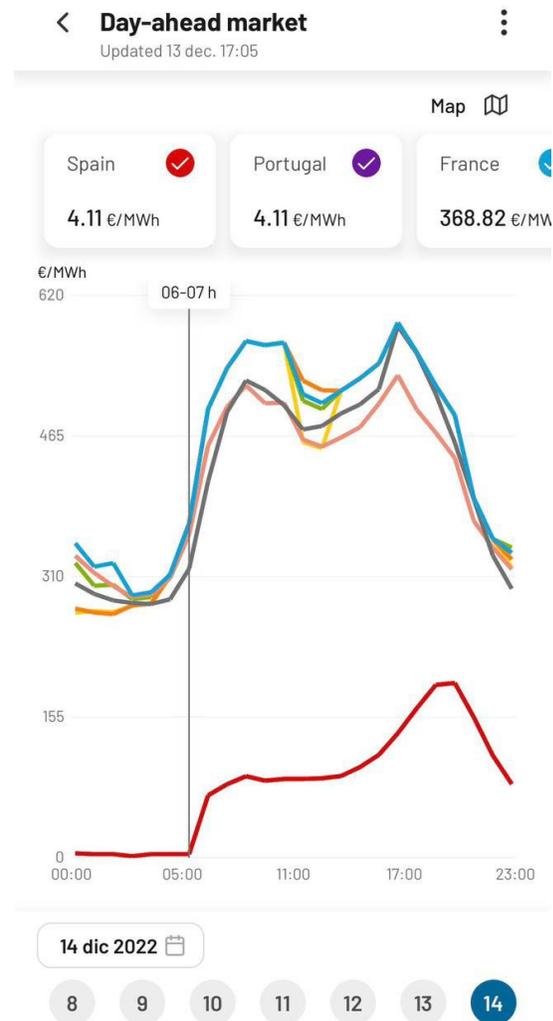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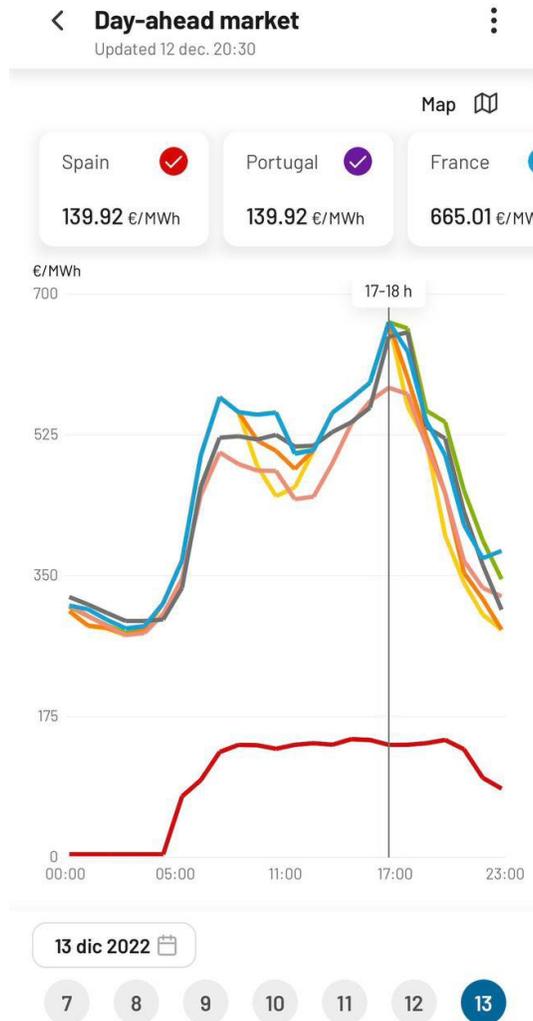
- 발전용 LNG에만 가격상한제를 적용한 스페인이 가장 저렴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Renewables 2022

발전용 가스가격상한(스페인, 포르투갈)의 결과

-기타 유럽국가들 대비 절반 이하의 도매요금 유지 (12월 12,13일 실적)



[토론3] 전기요금과 한전 적자에 대한 시민 인식과 자금시장의 반응,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국회의 역할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

한전채권이 자본시장에서 유발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과거엔 에너지 분야에서 대규모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PF조달이나 회사채조달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에너지사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고 봤다. 그러나 최근 한전 채권의 구축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량대기업임에도 회사채 발행 시 고금리는 물론 자기자본 증액 요구 등으로 진땀을 빼고 있다. 생각보다 민간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투자시장 민감도가 높은 일부 에너지벤처기업들은 자금경색으로 비상사태다. 한전 채권 한도증액의 여파를 국회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처방은 위험의 크기와 폭발력을 키우는 쪽이다.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다. 보다 신축적이고 유연한 대처, 과감한 방향전환과 속도전이 필요한데 너무 오랫동안 관치와 정치 영역에 갇혀 있던 우리는 아직 전근대적 에너지원별 논쟁만 반복하고 있다. 최한수 교수님이 발제에서 공기업 '공마불사' 문제를 지적했는데, 거론된 석탄공사 뿐만이 아니다. 최근엔 가스공사도 30조 사채발행한도가 연내 동날 것이라며 가스공사법을 바꿔달라고 했다. 한전,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대부분의 에너지자원 공기업이 마찬가지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거대한 외부환경 변화에 뒤처져 도태하고 있다는 의미다. 채권한도를 늘리거나, 전기료 일부를 정상화해서 급한 불을 꺼도 이들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 경쟁구도 전반에 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앞으로 유사한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말 실시된 여론조사(KBS)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중 7명(71%)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기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고, 월 1만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25%나 됐다. 작년 말 녹색연합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9명(89.4%)꼴로 2030년 석탄종료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동의했다. 전환과정에 수용 가능한 전기료 인상수준은 1만원 미만이 50%, 1~2만원이 24%, 3만원 이상도 9.2%나 됐다. 물론 이들 질문을 '한전 적자 해결 위해 요금을 올려도 되나?'로 바꾸면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한전, 공기업을 거

론하면 방만경영, 무사안일, 역대 연봉부터 떠올린다. 에너지공급과 가격규제를 정부 몫으로 보기에 '전기세'라고 부른다. 에너지위기와 그 본질적 해법에 대해 꾸준히 공 들여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원가에 기반을 둔 요금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국제유가가 인상돼 주유소 기름값이 올랐다고 정부 탓하는 국민은 없다. 유가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기름값도 내린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전 력을 계속 관치 영역으로 두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국민 복리에 부합하 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文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패착, 정공법을 피한 대가>

아직 저렴하고 안전하면서 환경적인 위해도 없고 언제나 물 쓰듯 쓸 수 있는 에너 지는 없다. 전 세계 신규 전력설비 투자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재생에너지가 그에 가장 가깝기는 하지만, 역시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하다. 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정책 의 결정적 패착은 '요금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였다. 당시 야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전기료 폭등 프레임을 제기하자 놓은 맞불이었다. 정공법을 쓰려고 했다면, 당장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미래산업과 일자리를 키울 수 있고, 에너 지자립률을 높여 에너지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론 요금을 더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어야 한다. 하지만 탈원전해서 전기료 올린다는 말이 두려워 임기 내내 전기료 현실화를 미적이고 미뤘다. 그래도 민주당이 연료비연동제 적용의 기반을 닦았다고 항변하지만, 처음 내릴 때 한번 적용한 뒤 두 번이나 인상적용을 미루다 지금엔 눈덩 이가 됐다. 이번에 일단 한전채 한도를 늘려주면, 이미 총선체제로 들어선 여·야와 정 부는 과연 내년 이후 충실하게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을까? 예상되는 전개는 그와는 정반대일 공산이 크고, 그 책임에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공법을 피한 대가는 과거 정부가 여러 차례 뼈아프게 치렀다. 이명박 정부 때 발 생한 초유의 9.15 순환정전은 국제유가 폭등에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전기료를 지 속적으로 동결한 결과다. 창조경제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 는 실적 만들기에 급급해 이미 산업용전기료 특혜를 받는 다소비기업들의 전기료를 더 깎아줬다. 그때 키운다던 10대 에너지신산업은 지금 모두 종적을 감췄다. 가격기 능과 시장기능을 동반하지 않는 변화는 견고한 기존시스템과 체제의 연명수단일 뿐이 다. 한전법 개정안에 대한 최근 민주당 내 반응과 대응을 보면, 강한 기시감이 든다. 국민적 관심사가 쏠린 가운데 비효율을 걷어내고 가격정상화를 호소할 수 있는 마지 막 기회를 스스로 내차고 있다. 이달 10일까지 전기 원료가 되는 석유, 가스, 석탄 수

입액이 1800억 달러, 한화로 234조원 정도다. 작년 동기에 1044억 달러였다. 사상 최대 수출실적이라면서 올해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를 넘보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명백한 사실을 놓고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불었다고 주장하는 여당에 번번이 밀리고 있다. 원전비중이 70%라는 프랑스는 왜 전력난에 시달리고 전기료 급등으로 신음하고 있나. 일단 대출한도 늘려 급한 불부터 끄자고 건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얘기다. 기후위기 대응 위해서라면, 에너지전환 위해서라면 전기료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했던 국민들은 지금 헛갈리고 있다. 누가 여당인가, 누가 야당인가, 민주당의 에너지 전환은 진정성이 있나.

한전 경영위기 해소방안

1 관련 현황

- '22년중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22.3Q까지 △21.8조원 적자 발생
 - * '22년 요금 원가는 194원/kWh, 판매단가는 134원/kWh 전망으로 △60원/kWh 손해
- 부족자금을 사채발행으로 충당 중이나, 내년 초 사채한도 초과 전망
 - * '22년말 사채잔액전망 71.2조원 > '23년 사채한도전망 40.4조원 | **30조원 이상 초과**
- 사채한도 초과시 전력거래대금 지급 불능 등 전력생태계 붕괴 위험
 - * 발전사 연료구매대금 지급 곤란, 투자 대폭 축소 및 협력회사 연쇄 유동성 위기 등
- 은행채·CP 수요흡수 등 실물경제·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 확대 우려
 - * 한전 자금조달 수요가 은행차입, 단기금융시장으로 이동, 재무위기에 따른 대표 공기업의 대외신인도 급락 및 외화차입 경색 등

2 한전 경영위기 해소방안

- ◇ 조속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근본적 문제 해결 추진
- ◇ 다만, 한전이 위법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한전 유동성 위기가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영향을 감안, 사채한도 확대도 반드시 필요

① 전기요금 정상화

- '23년은 기준연료비 등 약 50원/kWh 가량의 요금 인상요인 누적
- 단계적으로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요금 정상화 방안 마련 중

② 한전 사채한도 확대(한전법 개정)

- 사채한도 확대가 없으면 한전은 내년 초부터 위법상태에 직면
- 사채한도 확대로 위법상태 회피 및 채무불이행 사태 발생 방지 필요
- 사채한도를 확대하더라도 요금조정을 통해 신규 발행 최소화 추진

※ 적정 사채한도 배수 검토

- '22년말 사채잔액 유지(71.2조원) 기준 사채한도 적정배수 ⇒ **최소 4배 이상**

'22.말 사채잔액	'23년 사채한도 ('22.말 '자본금+적립금' × 배수)						
	2배(現)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71.2	40.4	60.6	80.8	94.5	113.4	132.3	151.2

사채발행한도 관련

한국전력공사법 개정 필요성 설명 자료

2022. 12

한국전력공사

1. 자금 상황

-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22년 3분기까지 23.9조원의 영업손실 발생, 29.7조원의 자금을 차입

구 분	뉴캐슬탄 (\$/ton)	LNG(JKM) (\$/MMbtu)	전력시장가격 (SMP, 원/kWh)	판매단가 (원/kWh)
'21년 평균	137	18	94	108
'22년 1~9월	355	35	177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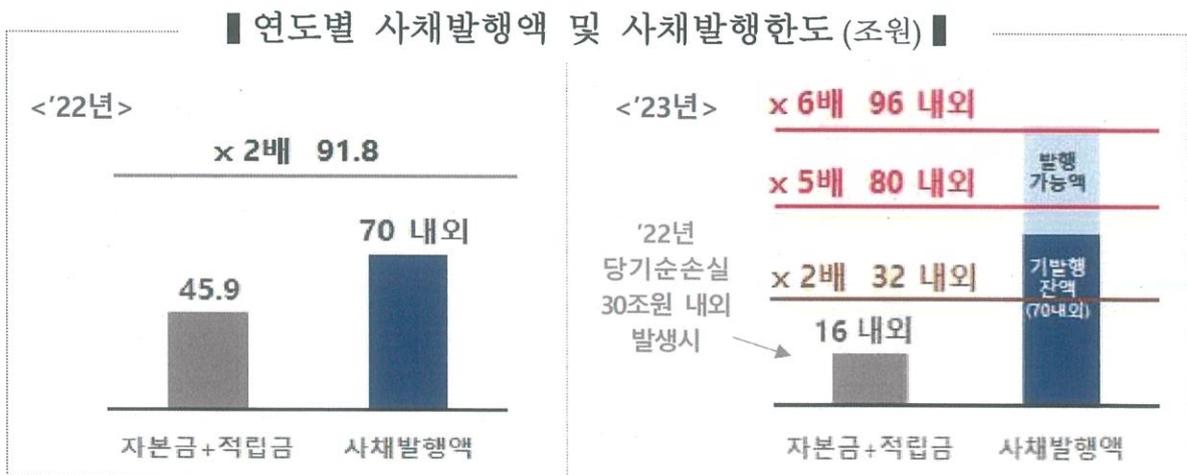
- 4분기에도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전력구입대금 지급을 위한 사채발행액은 급격히 증가하여 70조원 내외 도달 전망

[언론보도기준]

- ▶ 순손실(예상) : '21년 Δ5.6조원 → '22년(e) Δ30조원 내외 → '23년(e) Δ30조원 내외
- ▶ 사채발행액(예상) : '21년 38.1조원 → '22년(e) 70조원 내외 → '23년(e) 110조원 내외

2.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 현행 한전법에는 (자본금+적립금)의 2배로 사채발행액을 제한
 - ▶ 제16조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누적된 적자로 사채발행한도의 기준이 되는 적립금 등의 지속 감소
 - ▶ ('17)54.0조 → ('18)52.9조 → ('19)50.3조 → ('20)51.4조 → ('21)45.9조 → ('22)16조 내외^e
- '22년 대규모 손실로 사채 발행액이 급증, 사채발행한도 초과가 예상됨
- 법 개정이 없을 경우, '23년에는 사채발행이 불가



※ 한전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향후 5년간 14.3조원의 재무개선 달성 추진

3. 한전 대책

- '23년 사채발행을 위해서는 연내 한전법의 조기 개정 추진 필요
 - 자본금 등 대비 사채의 비율만 상승하고 사채발행한도액은 감소할 수 있음

■ 사채발행 불가시 영향 ■

-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음
 - * '19년~'22.9월 조달재원 비중 : 사채 92%, 기업어음 5%, 은행대출 3%
- 사채발행 불가로 자금 조달 곤란시 **국가 경제적 위기 초래**
 - 전력구입대금 지급불능으로 대국민 전력공급 차질
 - 차입금 상환 불가로 금융시장 충격 불가피
 - 협력회사 대금 지급 불가로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
 - 해외 원전사업 수주 불가, 한전 주가 폭락 등
-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채무불이행 상태**
 - * 연말 차입금 전망 : 약 77.7조원 ⇒ 내년 3월까지 약 16조원 조달 필요

4. 추가 대책

① 전기요금 정상화

- (기준연료비) 최근 1년('21. 12 ~ '22. 11월) 평균 연료비로 재산정, '22년 연료가격 상승분을 '23년 요금에 반영
- (기후환경요금) RPS비율 상향 등 비용 증가분을 '23년 요금에 반영
- (연료비 조정요금) 유보 없이 정상 운영하고, 연료비 변동성 증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상하한 확대 정부 건의
 - '22. 3Q부터 이미 상한 5원/kWh 도달, '23년 추가 가격신호 제공 곤란
- (요금제도 개선) 중장기적으로 원가 기반의 요금체계 확립

② 재정지원 전환

- 전기요금 복지할인 등 정책성 비용의 부담주체 변경(한전 →기금)
 - ▶ 복지할인, 송주법 지원, APT 노후변압기 교체, e효율 향상사업 등 약 7천억원
- 전기요금에 반영된 정책성 사업비용을 정부재정 세출 항목으로 지원
 - ▶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한 특례할인 등

③ 전력시장 개선

- (긴급상한가격) 내년에도 높은 수준의 SMP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적용
 - ▶ 고시에 의한 SMP급등조건 해당시 예외없이 지속 적용(단, 3개월 연속 적용 후 1개월 휴지)
- (석탄발전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발전공기업 석탄발전상한제 한시적 유보
 - ▶ 최근 연료비 급등 추세 및 글로벌 LNG 수급 상황을 감안, 탄력적 운영
- (발전용 연료세) 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율 최대한 감면 및 인하기간 연장
 - ▶ 현행 △15% 감면은 '22년 12월 종료 예정

④ 지분매각 정부지원

- (가스공사) 공적 지분 유지가 필요하므로 국가 또는 산은 등이 인수
- (지역난방공사) 한전 지분(19.6%) 전량 민간 매각에도 공공성 유지 가능

⑤ 유동성 확보 방안

- 사채 외 자금 최대한 확보(기업어음, 은행차입, 당좌차월 확대 등)
 - ▶ 법안 부결에 따른 부정적인 시장반응이 예상되므로, 정부 협조 필요
 - ▶ 2~3주의 은행 심사일정 감안시, 현실적으로 연말 이후 확보 가능 전망

붙임 1 한전의 재무개선 노력

- ◆ 한전은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5년간 약 14조원 규모의 재무개선 추진 계획**(’22년~’26년 재정건전화계획)

자산매각	투자조정	비용절감	수익확대	자본확충
1.5조원	2.5조원	2.3조원	1.0조원	7.0조원

- ◆ **실효성 있는 재무개선 추진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재정건전화위원회를 통해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예정**

- (자산매각) 출자지분, 해외사업,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 (1.5조원)
 - 국내출자 :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 지분 외 잔여 출자지분 매각
 - 해외출자 : 운영·건설중인 해외 석탄발전소 단계적 매각 등 해외사업 재편
 - 부동산 :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 매각 원칙하에 변전소 유희부지등 매각
- (투자조정)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없는 범위 내 설비투자 조정 (2.5조원)
 - 시기이연 : 건설사업 공정관리를 통한 자재발주 및 공사착공 시기 조정
 - 물량조정 : 변전소 옥내화, 사옥 신·증축 등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 (비용절감) 제도개선 및 고강도 긴축경영 추진 (2.3조원)
 - 전력구입비 : 석탄발전 제한 완화 등 전력시장 제도개선
 - 기타비용 :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축소, 설비운영 효율화 및 용역심의 강화
- (수익확대) 고객부담금 현실화, 할인제도 조정 등 (1.0조원)
 - 표준공사비 및 재사용수수료 현실화, 자동이체고객 요금할인 조정 등
- (자본확충) 장부상 저평가된 토지의 재평가를 통한 실질가치 반영 (7.0조원)

붙임 2 공사·공단 법률상 사채발행액 제한 규정 및 배수

기관명	관련 법령	배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	20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33조	10배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2조	10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법 제11조	5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	5배
부산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제34조	4배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제34조	4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4조	4배
인천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제34조	4배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법 제14조	4배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 제13조	4배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법 제15조	4배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정관	4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법 제15조	2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1조	2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2조	2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법 제27조	2배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법 제12조	2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3조	2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2배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법 제13조	1배

참고 1

타기관 사채발행한도 관련 법률 개정 사례

□ 철도공사법 제 11조 (사채의 발행 등) ('13. 8월 개정)

개 정 (전)	개 정 (후)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개정 사유) 용산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사채발행 및 한도 확대 필요

□ 가스공사법 제 14조 (사채의 발행 등) ('98. 9월 개정)

개 정 (전)	개 정 (후)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개정 사유)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천연가스 수입가격 상승으로 적자가 증가하고 사채발행한도가 감소, 천연가스 공급망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한도 확대 필요

□ 중소기업진흥법 제 65조 (채권의 발행) ('07. 4월 개정)

개 정 (전)	개 정 (후)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사유)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발행 한도 확대 필요

참고 2

채권발행 관련법 제·개정 이력(상법 vs 한전법)

상법 제470조(총액의 제한)	구 분	한전법 제16조(사채의 발행등)
<p>[1962. 1. 20]</p> <p>① 사채의 총액은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p>	법 령	
<p>[1984. 4. 10]</p> <p>① 사채의 총액은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p> <p>사채발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에서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배로 증대함</p>	법 령	<p>[1989. 3. 25]</p> <p>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p>
	개 정 이유	<p>정부의 공기업민영화방침에 따라 한국 전력공사의 정부소유주식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동 공사가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제도를 정비</p>
<p>[1995. 12. 29]</p> <p>①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p> <p>탄력성과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p>	법 령	<p>[1998. 9. 23]</p> <p>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p>
	개 정 이유	<p>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외화로 발행된 사채의 원화환산액이 급증하여 사실상 사채발행액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필요한 사채발행을 못하게 되므로, 사채의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사채발행액의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에서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로 증액함</p>
<p>[2011. 4. 14]</p> <p>① 삭제</p>	법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채의 발행한도 제한이 비현실적이고 법에서 허용하는 사채 종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현행 수탁회사 제도는 사채권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사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한 자율성이 증대되고, 사채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 정 이유	

현 행	수 정 의 건
<p>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생략)</p> <p>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u>2배</u>를 초과하지 못한다. <후단 신설></p> <p>③·④ (생략)</p> <p>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⑥ <신설></p> <p>제18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5배----- . 다만, <u>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를 6배의 범위 내로 한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 발행을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8조(감독)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u></p>